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신원식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규모·장기·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되었음.

따라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종류 · 내용 · 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61조의3, 제61조의5 등 신설)
- 나. 방위사업계약에 대한 입찰,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한 국방조달계약심의회 신설(안 제61조의4 신설)
- 다. 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개산계약 정산, 착수금 · 증도금 지급,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6 등 신설)
- 라.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10 신설)
- 마.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8 신설).
- 바. 청렴서약 대상 확대, 생명 ·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군수품에 대한 정의 구체화 등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반영(안 제2조의3 등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 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의 테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피해 복구 또는 예방에 필요한 군수품
3. 국가적 차원의 재해, 재난 및 감염병 등에 대비·대응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군수품
4. 해외파병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군수품

제2조의4(장병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 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어 성능 중심의 평가가 필요한 전력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촉한”을 “위촉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은 이 영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제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위사업추진 관련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2. 사업추진 관련 연구보고에 관한 정보
3. 위원회·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4.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되는 주요한 연구성과물에 관한 정보

제5조제1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법 제6조제5항”을 “법 제6조제6항”으로, “법 제6조제8항”을 “법 제6조제9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6조제6항”을 “법 제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7항”을 “법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제5항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요소(이하 “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를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법 제3조제13호의 전력화지원요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조제13호가목1) 및 나목(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하며, 소요군은 법 제3조제13호가목2)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3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군수품

제50조제4항 중 “제60조제1항”을 “법 제3조제16호 및 이 영 제61조의3”

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부속품의 생산·구매계약을 포함한다”를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생산·구매계약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수입한 수리부속품 중 해외정비가 불가능한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을 갖춘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국내업체와”를 “국내 수리원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결합체(이하 “수리부속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수리부속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5.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가 복수이고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61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46조제5항”을 “법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장기계약) ①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장기계약은 계약이행에 수년이 요구되어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② 장기계약에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용역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을 계약서에 부기하고 연차별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확정하여, 계약이행 기간 동안 계약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④ 그 밖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의4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간 존속하며,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조달계약심의실무위원회(이하 “계약심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심의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안을 심의·조정한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심의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5(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소요군이 제2조의4의 군수품을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을 요구한 소요군과 협의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과 소요군이 협의한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6(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 구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할 때 필요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따른다.

③ 그 밖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7(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 및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의5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장비 또는 물품 등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가격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이행 중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술변경, 추가 요구사항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경쟁입찰을 통하여 체결된 개산계약으로서 제3항 이외의 이유로 정산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최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이외의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 대비 증가한 금액이 입찰공고 당시 사업예산과 최초 계약금액의 차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범위를 한도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한 세부기준 등 그 밖에 개산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8(국내산 물품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등에 국내산 물품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에게 외국산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사용 방지 대책, 보안대책 또는 취급·관리 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 등에 이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9(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법 제59조 및 이 영 제7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10(핵심기술 등의 적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라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핵심기술 등의 활용도 등을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서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1(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양산의 경우 방산물자에 한정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약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거나 계약품목의 특성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적 차원의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2. 정부의 시책, 규격변경, 전산장애, 행정 지연 등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주요 원자재 또는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요 원자재 또는 부품의 수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⑥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을 첨부한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은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감면 또는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계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상금 최종 결정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⑧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다목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고도의 기술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여부(이하 ‘성실이행’이라 한다)와 가혹한 시험조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관은 지체상금 최종 결정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8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제9항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제3호다목의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사유의 인정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⑪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은 계약 품목의 특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지체의 원인이 있는 하도급자 외에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없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⑫ 그 밖에 지체상금 부과와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2(계약의 변경 등) ① 법 제46조의5에 따라 계약관이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에 따른 계약변경 시에는 계약관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영 제61조의11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 시험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 후 계약완료일 전까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15호가목의 방위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시험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업계속추진 여부 결정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정된 공정을 예정된 일자에 실시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방위사업계약상대자 및 소요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에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된 원가 계산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시점에는 일반물자였으나 계약기간 중 법 제34조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2. 계약체결시점에는 방산물자였으나 계약기간 중 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⑦ 그 밖에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을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계약금액이 부당이득사실에 따라 재산정한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③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알선·청탁은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중개하거나 부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의11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1조의11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감면을 최종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3(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u> <u>한 군수품) 법 제3조제15호라목</u> <u>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u> <u>말한다.</u> 1. <u>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u> <u>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u> <u>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u> <u>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u> <u>한 피해가 예상되어 경계태세</u> <u>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응하</u> <u>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u> 2. 「<u>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u> <u>한 테러방지법</u>」 제2조제1호의 <u>테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u> <u>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u> <u>어 피해 복구 또는 예방에 필</u> <u>요한 군수품</u> 3. <u>국가적 차원의 재해, 재난 및</u> <u>감염병 등에 대비·대응하거</u> <u>나 피해 복구를 위하여 긴급</u> <u>하게 조달이 필요한 군수품</u> 4. <u>해외파병업무를 신속히 수행</u> <u>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u>

<신 설>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국방부장관은 위원회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

필요한 군수품

제2조의4(장병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 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어 성능 중심의 평가가 필요한 전력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위촉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은 이 영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

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금지에 관한 사항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방위사업추진 관련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2. 사업추진 관련 연구보고에 관한 정보
3. 위원회·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8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4.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되는 주요한 연구성과물에 관한 정보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5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5. (현행과 같음)

6. -----
법 제6조제6항 -----
----- 법 제6조제9항 -----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①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6항 본문
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
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② (생략)

③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
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분과위
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
회: 법 제9조제2항제1호, 제3
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관
한 사항

② ~ ⑤ (생략)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①
----- 법 제6조제7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6조제8항-----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

1. (현행과 같음)

2. -----

-- 사항(「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제5항단서에 따른 안보
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 방위사업청장 및 소요와 관련된 군,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요소(이하 “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1호가목 및 제2호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하며, 소요군은 제1호 나목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1.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전투발전지원요소

가.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나.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 -----

--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법 제3조제13호의 전력화지원요소-----

-----.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조제13호가목1) 및 나목(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하며, 소요군은 법 제3조제13호가목2)의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삭 제>

교육훈련 및 주파수

2.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 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 ④ (생략)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전시·사변 등으로 긴급한 구매가 필요한 품목

6. ~ 8. (생략)

③ ~ ⑥ (생략)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 ~ ③ (생략)

④ 방위사업청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군수품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3조제16호 및 이 영 제61조의3-----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체는 조달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60조(장기계약) ①방위사업청장

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이하 “장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때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0조 <삭제>

판단되는 때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제37조제1항 · 제50조제3항 및 제69조의 규정은 방산물자를 장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계약의 종류 ·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 · 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부속품의 생산 · 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

제61조(계약의 종류 ·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하는 경우	<u>것으로 한정한다)의 생산·구매계약을 포함한다)-----</u> --
1의2. ~ 4. (생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5. <u>적의 침투·도발 등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물자를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u>	5. <u>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u>수입한 수리부속품 중 해외정비가 불가능한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을 갖춘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국내업체와 정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u>	8. <u>국내 수리원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결합체(이하 “수리부속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수리부속품의 -----</u> --
<u>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u>	<u>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가 복수이고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u>
1. <u>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u>	

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생산(합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계약

2.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 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

있다.

<삭 제>

⑤ 그 밖에 -----

-----.

제61조의2(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7항-----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신 설>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의3(장기계약) ① 법 제3조 제16호에 따른 장기계약은 계약 이행에 수년이 요구되어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② 장기계약에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용역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을 계약서에

<신 설>

부기하고 연차별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확정하여, 계약이행 기간 동안 계약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④ 그 밖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의4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
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
정을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계
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영 시
행일부터 5년 간 존속하며, 존
속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조달계약심
의실무위원회(이하 “계약심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계약심의실무위원회는

<신 설>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안을 심의·조정한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심의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5(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소요군이 제2조의4의 군수품을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조달을 요구한 소요군과 협의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과 소요

<신 설>

군이 협의한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6(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 계약(국외 구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할 때 필요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따른다.

<신 설>

③ 그 밖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7(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 및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의5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장비 또는 물품 등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가격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이행 중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술변경, 추가 요구사항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신 설>

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경쟁입찰을 통하여 체결된 개산계약으로서 제3항 이외의 이유로 정산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최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이외의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 대비 증가한 금액이 입찰 공고 당시 사업예산과 최초 계약금액의 차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범위를 한도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한 세부기준 등 그 밖에 개산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8(국내산 물품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이 우선

<신 설>

획득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등에 국내산 물품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에게 외국산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등의 사용 방지 대책, 보안대책 또는 취급·관리 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 등에 이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9(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법 제59조 및 이 영 제7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61조의10(핵심기술 등의 적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
은 법 제46조의3에 따라 경쟁입
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
서평가 시 핵심기술 등의 활용
도 등을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서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
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1(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
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
액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
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양산의 경우 방산물자에 한정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약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거나 계약품목의 특성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를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적 차원의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2. 정부의 시책, 규격변경, 전산장애, 행정 지연 등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주요 원자재 또는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요 원자재 또는 부품의 수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⑥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법 제 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을 첨부한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은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감면 또는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계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상금 최종 결정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⑧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다목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

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고도의 기술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여부(이하 ‘성실히 이행한다’)와 가혹한 시험조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관은 지체상금 최종 결정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8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

<신 설>

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제9항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46조의4 제2항 및 제3호다목의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사유의 인정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⑪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은 계약 품목의 특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지체의 원인이 있는 하도급자 외에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없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⑫ 그 밖에 지체상금 부과와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2(계약의 변경 등) ①

법 제46조의5에 따라 계약관이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에 따

른 계약변경 시에는 계약관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영 제6
1조의11제8항 및 제9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②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
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변
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분
야 시험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
는 시험평가 후 계약완료일 전
까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
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
다.

③ 법 제3조제15호가목의 방위
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시험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업계속추진 여부 결
정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시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
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
임없는 사유로 예정된 공정을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예정된 일자에 실시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방위
사업계약상대자 및 소요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된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시점에는 일반물자
였으나 계약기간 중 법 제34
조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
된 경우

2. 계약체결시점에는 방산물자
였으나 계약기간 중 법 제48
조제3항에 의하여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⑦ 그 밖에 계약의 변경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생략)
2. 삭제
3. 사업자등록증

③·④ (생략)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

1. (현행과 같음)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계약금액이 부당이득사실에 따라 재산정한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의

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 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② 청렴서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③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알선·청탁은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중개하거나

<u><신 설></u>	<u>부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u>
	<u>④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신 설></u>	<u>⑤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13